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10. 14.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호 제141호

제출연월일: 2019. 10. 14.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회계]

- O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건물 취득
 - ·내동 1111번지 9,305㎡(건물)
- O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 · 연무읍 안심리 1125번지외 4필지 10,000㎡(토지), 4,000㎡(건물)
- O 화지중앙시장 복합쉼터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 · 화지동 69-8번지 109㎡(토지), 196.495㎡(건물)

3.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총 괄

○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7 h	- 1		<u>당초(A</u>)	1	변경(A+	<u>C)</u>		증감(C))	비고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계	토지 건물 기타	3	23,610.495	42,380,000							
취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3	23,610.495	42,380,000							
득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시대	·용 및 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가-1. 일반회계

○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7 h	<u>당초(A)</u> 분		<u>당초(A</u>)	1	변경(A+	<u>C)</u>		증감(C))	비고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계	토지 건물 기타	3	23,610.495	42,380,000							
취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3	23,610.495	42,380,000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시 대	 용 및 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ネスカオ	취득 취득		비고
번호	구분	소 재 지	수량	추정가격	시기	사유	비끄
		사업별개요참조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 추정가격	처분	처분사유	비고
번호	구분	소 재 지	수량	T'8/1/4	시기	시판기표	1111
		해 당 없 음					

라. 사업별 개요

- 일반회계
- 1.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건물 취득
- □ 취득 개요
 -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현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보육 시설의 복합화 기반 조성

- 용도 :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O 취득재산: 건물 1동

(단위:백만원,%)

01 71	지번	70			취득		
위 치	시민	규모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취득 시기
내동	1111 (대)	지상 5층 / 지하 1층	27,380	8,350	5,289	13,741	22년 상반기

- O 사업기간: 2019.~2021.
- O 사업규모: 부지면적 3,376.8m², 건축연면적 9,305m²(지상 5층/지하 1층)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어린이도서관 (3,777㎡)	생활문화센터 (3,167㎡)	주거지주차장 (2,361㎡)	다함께 돌봄센터 (200㎡)	공동육아 나눔터 (200㎡)				

O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비율	계	2020	2021	비고
계	100	27,380	11,138	16,242	
국 비	30	8,350	4,150	4,200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 비	20	5,289	_	5,289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시비	50	13,741	6,988	6,753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O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 전국에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수는 99개관이며, 충남은 금산, 아산, 서산에 위치하고 있고 아직까지 충남지역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수도권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임
 - 논산시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이의 문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건립이 필요

O 생활문화센터

- 현재 다양하게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확대와 주민 수요형 프로 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문화센터와 논산문화원, 열린도서관 등에서 개최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의 문화, 예술,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O 주거지주차장

- 복합화 건물 건립으로 없어지게 될 해당 임시주차장을 대체하며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주거지 주차장 필요
- O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현재 논산시 내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없으며, 어린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의 기능을 복합화 하여 주민 커뮤니티 강화와 더불어 보육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역할 강화 기대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O '19. 06 ~ 1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충남연구원)
- O '19. 07. : 주민수요조사 실시
- O '19. 08. :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
- O '19. 09. : 생활SOC복합화사업 20년도 사업 선정(균형위)
- O '19. 10. ~ 12. : 중앙투자심사(행자부)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
- '20. 01. ~ 06. : 실시설계용역
- O '20. 07. ~ '21. 12 :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 현장 사진



2.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개요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현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보육 시설의 복합화 기반 조성

- 용도 :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O 취득재산:

<건물 1동>

(단위:백만원)

위 치	71H	구금 사업비					취득
T 1	지번	廿工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시기
연무읍 안심리	1125-18 외	지상 3층	10,300	4,950	2,200	3,150	22년 상반기

<토지>

(단위:백만원,m²)

연번	지목	재산표시 소재지	면적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계		계 10,000					
1	대	연무읍 안심리 1125-18	2,202		`20.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유지	
2	대	연무읍 안심리 1125-17	1,190	0.500	`20.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유지	
3	잡	연무읍 안심리 1126-26	1,448	3,500	`20.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유지	
4	잡	연무읍 안심리 1125-32	1,760		`20.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유지	
5	임	연무읍 안심리 산307-2	3,400		`20.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유지	

추정가격 **35억원** = 350,000원 × 10,000m²

O 사업기간: 2019.~2021.

O 사업규모: 부지면적 10,000 m², 건축연면적 4,000 m²(지상 3층)

구분	층	규모	시설
그미ᆌ으세터	1	1,500 ㎡	수영장, 유아풀, 워킹풀 등
국민체육센터	2	1,500 ㎡	헬스장. 시니어헬스, 샤워장 등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3	1,000m²	맞이홀, 특성화공간, 동아리 방 등

O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비율	계	2020	2021	비고
계	100	13,800	7,500	6,350	
국 비	36	4,950	2,450	2,550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 비	16	2,200	-	2,200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시비	48	6,650	5,050	1,600	부지매입비 포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O 연무읍은 인근의 논산시, 강경읍과 더불어 도시지역으로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 O 해당 사업대상지는 아파트, 재래시장,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문화, 체육,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 연무문화체육공원은 실외 체육시설과 소규모 실내체육관 위주의 다기능공간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주기능인 실내수영장이 없음.
 - 생활문화센터의 동아리, 취미활동, 주민커뮤니티공간이 다소 중복되지만, 주민문화 예술향유공간이 부족함.
- O 도심 공원과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복합화로 도심 속 주민들의 쉼터 제공 및 건강 증진, 그리고 문화적 소외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19. 08. ~ 12.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충남연구원)

O '19. 07. : 주민수요조사 실시

O '19. 08.: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

O '19. 09. : 생활SOC복합화사업 20년도 사업 선정(균형위)

O '19. 10. ~ 12. : 도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

O '20. 01 ~ 06 : 부지 매입 협의 및 매입(국방부 충청시설단)

○ '20. 01. ~ 06. : 실시설계용역

O '20. 07. ~ '21. 12 :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 현황사진



3. 화지중앙시장 복합쉼터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개요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화지중앙시장 시민 편의 복합쉼터 조성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주로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용도 : 화지중앙시장 시민 편의 복합쉼터

O 취득재산:

(단위:백만원,m²)

연번 개산표시		면적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한단	종류	소재지	건역	가격	시기	사유	9175
계			1,200				
1	토지	화지동 69-8	109	900	`20.	시민편의	
2	건물	화지동 69-8	196.495	300	`20.	복합쉼터조성	3층

O 사업기간: 2020.1.~2020.12.

○ 사업규모: 부지면적 109m², 건축연면적 196.495m²(지상 3층)

구분	층	규모	시설
시민편의 복합쉼터	3	196.495	휴게의자, 버스정보알림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건강체크기기 등

○ 소요예산: 1,200백만원 <시비 100%>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O 화지중앙시장 1구역 입구(버스정류장)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개인소유 토지로 편의시설(비가림,의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임.
- O 시장 이용 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쉼터 조성이 필요.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토지매입: `20년 1월~2월

○ 설계용역: '20년 3월

O 사업추진: `20년 3월~12월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등 사업비로 한다.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